

부산광역시사하구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50
----------	----

제출년월일 : 1999. 10 8.

제 출 자 : 사하구청장

1. 제안사유

경찰관서에서 원대복귀 근무중인 방범원에 대한 인사권과 복무 감독권을 일원화 하고 현실에 맞지않는 불 합리한 조항을 폐지 및 보완하기 위함.

2. 주요골자

- 가. 방범원의 경찰관서 파견근무제 폐지 (안 제4조의 2)
- 나. 지방고용직공무원의 휴직 및 휴직기간 보완(안 제8조, 제8조의2, 제8조의3)
- 나. 방범원 직명을 「지도원」으로 변경하고 사환 직명 및 근무상한 연령 폐지(안 제3조 별표)

3. 관계법령

- 가. 지방공무원법 제2조 제3항, 제4항

부산광역시사하구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사하구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를 삭제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휴직) 본문중 “고용직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를“임용권자는 고용직공무원이 다음 제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휴직을 명하여야 하고, 다음 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으로 한다

제8조2 및 제8조의3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휴직기간) 제8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복무기간이 종료된 때 까지로 한다.

제8조의3(휴직의 효력) ① 휴직중인 고용직공무원은 공무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② 제8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한 고용직공무원은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30일 이내에 임용권자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하며, 임용권자는 지체없이 복직을 명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복귀신고를 한 때에는 당연복직되며, 복직일 전일까지는 휴직기간으로 본다.

별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지방고용직공무원의 직종·직명 근무상한 연령표

직 종	직 명	근무상한연령
1 종	지도원	53세

※ 비고 : 지도원은 조례 제 호(1999년 월 일 공포)시행당시 재직중인자를 임용함에 그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② (고용직 직명 변경에 따른 다른 조례등의 개정) 부산광역시 사하구조례·규칙·훈령·예규중 “방법원”은 “지도원”으로 개정된 것으로 본다.
- ③ (직명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재직중인 방법은 지도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4조의 2(방법원의파견) 임용권자는 소속 고용직공무원중 방법을 경찰서 또는 파출소에 파견 근무하게 할 수 있다.</p>	<p>(삭 제)</p>
<p>제8조(휴직) 고용직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p> <p>1.(생략)</p> <p>2.(생략)</p>	<p>제8조(휴직) 임용권자는 고용직공무원이 다음 제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휴직을 명하여야 하고, 다음 제2호에 해당한때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p> <p>1.(현행과 같음)</p> <p>2.(현행과 같음)</p>
<p><신 설></p>	<p>제8조의2(휴직기간) 제8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복무기간이 종료된 때 까지로 한다</p>
<p><신 설></p>	<p>제8조의3(휴직의 효력) ① 휴직중인 고용직공무원은 공무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p> <p>② 제8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p>

현행	개정안																		
<p>(별 표)</p> <p>지방고용직공무원의 직종·직명 및 근무상한연령표</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margin-top: 10px;"> <thead> <tr> <th style="width: 15%;">1종</th> <th style="width: 15%;">2종</th> <th style="width: 30%;">경노무</th> <th style="width: 35%;">근무상한연령</th> </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 center;">방법원</td> <td></td> <td></td> <td style="text-align: center;">53세</td> </tr> <tr> <td></td> <td></td> <td style="text-align: center;">사환</td> <td style="text-align: center;">58세</td> </tr> </tbody> </table> <p style="margin-top: 10px;">※ 비고 : <u>방법원은 조례제100호</u> (1989년 2월16일공포)시행 당시 재직중인자를 임용함에 그친다.</p>	1종	2종	경노무	근무상한연령	방법원			53세			사환	58세	<p><u>한 고용직공무원은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30일 이내에 임용권자에게 이를 신고 하여야 하며, 임용권자는 지체없이 복직을 명하여야 한다.</u></p> <p>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복귀신고를 한 때에는 <u>당연복직되며, 복직일 전일까지는 휴직기간으로 본다.</u></p> <p>(별 표)</p> <p>지방고용직공무원의 직종·직명 및 근무상한연령표</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margin-top: 10px;"> <thead> <tr> <th style="width: 25%;">직종</th> <th style="width: 25%;">직명</th> <th style="width: 50%;">근무상한연령</th> </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 center;">1종</td> <td style="text-align: center;">지도원</td> <td style="text-align: center;">53세</td> </tr> </tbody> </table> <p style="margin-top: 10px;">※ 비고 : <u>지도원은 조례제 _____ 호</u> (_____ 년 월 일공포)시행 당시 재직중인자를 임용함에 그친다.</p>	직종	직명	근무상한연령	1종	지도원	53세
1종	2종	경노무	근무상한연령																
방법원			53세																
		사환	58세																
직종	직명	근무상한연령																	
1종	지도원	53세																	